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출석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석수당·안전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
한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건당 오백만원
(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
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 다만,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
세와 부과한 회계년도폐쇄일 현재 소송계
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위임사무 변경에 다른 적용례) 제6조의 개
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
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
2호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의2

제2항제2호”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인명구
조”를 “인명구조, 부상자치료”로 하고, 동조동
항제6호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중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를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
으로 대물변제 받아”로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
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
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
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
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
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9조제5항제6호 및 동조동항 제7호중 “연접한”을 각각 “인접한”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8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9.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9조제5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data-bbox="821 459 957 504"> <tr> <td>의안번호</td> <td>912</td> </tr> </table> <p>2001년 9월 일 재정경제위원회</p>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각종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 정원을 보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총정원 감축 : 106명(안 제2조본문) -(현행) 15,340명 → (개정) 15,446명 나)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 106명(안 제2조제2호) -(현행) 4,874명 → (개정) 4,980명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 【총괄부분】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2001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에 106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2001년도 증원을 승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세부사항】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보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2001년 4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소방현장 보강인력 106명 증원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임. ○지난 조례 개정시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화재, 수재, 지진, 건축물·교량 붕괴, 대형 교통사고 등의 도시재해</p>	의안번호	912
의안번호	912		